

## 보상계획 공고

사천시에서 시행하는 『하탑물통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02월 20일

사 천 시



### 1. 사업의 개요

- 가. 사업명 : 하탑물통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
- 나. 위치 :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탑리 853번지 일원
- 다. 사업면적 : 9,500㎡
- 라. 사업기간 : 2018. 2. ~ 2019. 12.

### 2. 사업시행자 : 사천시장

### 3. 보상대상 내역

- 가.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권리 일체
- 나. 세부내역은 개별 통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, 사천시 홈페이지 게재

### 4. 열람기간·장소 및 이의신청

- 가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18. 02. 20. ~ 03. 06.(14일간)
- 나.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: 사천시청 재난안전과(☎055-831-3315)
- 다. 이의신청 방법 :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
## 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 상 시 기 : 추후 감정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

나. 보상금 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,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다. 감정평가업자 추천 :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/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『감정평가업자 추천서』

토지소재지	편 입		소 유 자		서명 (날인)	전화번호 (주택 및 휴대폰)	평가업자
	지번	면적(m <sup>2</sup> )	주 소	성 명			

라. 보 상 절 차 :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⇨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⇨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⇨ 수용재결(보상협의 불성립시) ⇨ 공탁 및 수용

## 6. 기타사항

가.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의거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

나. 보상에 필요한 협의기간, 구비서류 및 손실보상명세서,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.

다. 본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(수량)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
라.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마.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재난안전과(☎055-831-331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